의료분쟁시 의료인의 자세

- 1. 환자의 요구(need)가 뭔가? 위로의 문제(주관적접근) VS 배상의 문제(객관적 접근)
- 2. 배상의 문제 -> 객관화(key word)
- 3. 가져야 할 자세
 - 1) 차트 정리부터 철저 (가장 긴급) 2) 녹음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 - 대답은 매뉴얼대로 반복해야
 - 3) 직원들 대답, 행동 매뉴얼대로 반복 VS 창의적,즉흥적 대응 금물
 - 4) Yes, NO 의 접근 버려야 (Ex: 잘못했어요? 안 했어요? 책임질거에요? 안 질거에요?) -

 - 5) 절대 조급함 버려야 (세월호) 시간이 해결..

배상요구 분쟁 문제 팁 1. 진료시간에 절대 분쟁에 응하지 마라

-> 대응방법: 따로 시간을 낼테니 현재는 진료시간이니 협조해 달라. 진료하게 도와달라만 반복 (불응시 업무방해죄로 대응)

- 1)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낸 경우 대화 매뉴얼대로 반복 ① 의사의 책임이라고 나온다면 모든 책임지겠다
 - ② 절차에 따라 객관적 손해액을 산정하자.
- 2) 5분이상 불응시 매뉴얼대로 신고
- 원내 대응매뉴얼에 따라 직원이 112 신고 -> 경찰출동 -> 경찰은 반드시 현행범으로 입건해야 하고

직원이 경찰서 가서 본대로 현행범에 대해 고발인 조사 -> 원장은 진료 계속

요구한 사례 • 가족들 요구 1. 주사맞고 잘못되었으니 당신 잘못이다. 2. 어떻게 책임질거냐?

• 본원에서 NSAID 엉덩이 근육 주사를 맞은 후 걷지를 못한다고 아들, 며느리, 사위 총출동하여 배상을

2. 책임질 것 없다 -> 분쟁 격화

•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

1. 우리 잘못 아니다

객관화: (긍정도 부정도 하면 안 됨) 아! 그러셨어요? 심려가 크시겠군요. 일단 왜 이런지 대학병원에

• 결과: 그 이후에 오지 않았음

가서 원인을 규명해 봅시다 -> 병원 잘못이라고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

의료분쟁사례1: 주사후 걷지못하는 80세 할머니

- 1. 병원측 잘못이다.

• POD # 1 병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

•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1. 우리 잘못 아니다

2. 어떻게 책임질거냐?

• 가족들 요구

- 2. 책임질 것 없다 -> 분쟁 격화
- 해법 ,의료분쟁사례**2**: 폐색전증 사망 사건

• 결과:1년이후 1000만원 위로금 판정

┃ 객관화: (긍정도 부정도 하면 안 됨) 모든 책임진다 -> 원인규명 및 과실 인과관계 절차에 따르자

경찰서 갔을 때 진술에 유의해야 한다

: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. 보통은 형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

있어서 각개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말함

1) 묵비권!!

2) 헌법 12조 2항 (묵비권!!)

3) 미란다 원칙

: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고지 하지 않고 수사하면 무효, 자발적, 자의적 진술이 아니면 무효

: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

1) 의사는 무슨 죄인가? : 업무상 과실치상, 업무상 과실치사 2) 핵심 쟁점은?

의료분쟁으로 피고소시 알아야 할 사항

- 과실 유무 다시 해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했으나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이었다. 원인?왜 그렇게 되었는지도

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다.

3) 가급적 피해야 할 진술

Ex)장손상 등의 사건

생각해 보니 이런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. 다시 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-> 처벌됨

1) 의료법 12조 2항: 방조자도 처벌함 :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ů기재ů약품,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ů

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병원난동시 어떤 죄가 성립?

- 2) 의료법 제87조 1항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의료법 12조2항
- 3) 업무방해죄 (형법 314조)
- 5) 명예훼손죄(형법307조): 명예를 훼손시키면 성립 6)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
- 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4) 모욕죄 (형법 311조): 욕,조롱,악평 등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 성립

- 7) 주거침입,퇴거불응죄 (형법 319조):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립
- 9) 상해죄 (형법 257조) : 다쳤을 때
- 10) 손괴죄 (형법 371조) : 병원 기물 파손

8) 폭행죄 (형법 260 조) : 폭력적 행동

- **정의**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

달라고 하면 됨

내용증명

의미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 **방법**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을 작성해서 2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